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공사의 경영의 기반 마련과 인권 친화적 수행을 위해 조직과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하고 측정하는 인권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I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추진배경

-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¹⁾의 영향을 규명,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
- 2) 인권경영 현황 점검 및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잠재적 인권리스크 사전방지와 인권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2. 추진목적

- 1) 인권경영 고도화를 통한 선진적 인권경영 실천 및 대외 의지 표명
- 2)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에 따른 인권의식 향상 도모

3. 추진근거

- 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2018.08.31.)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문 송부」
- 2)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제27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 3) 경영평가 비중 확대 : 신설된 윤리경영(3점-> 5점) 지표 중, 세부평가항목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프레임워크의 실행, 일반원칙 18

(윤리경영) 배점 확대 + 권익위 평가 결과 반영 확대 + 중대 위반 시 0점 처리

- ❶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3→5점) 및 평가내용 기준 강화
 - ※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 ❷ 권익위 청렴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 ※ 현행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통합('21.12월경 개편방안 확정 예정)
- ❸ 중대 위반 또는 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
 - ※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

II

2021년 평가개요 및 지표의 구성

1. 2021년 인권영향평가 개요

- 1) 평가기간 : 2021. 09. 07.(화) ~ 2021. 09. 14.(화)
- 2) 평가범위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부문 (지역복지팀의 5개 분야)
- 3) 평가주체 : (1차) 인권경영TF팀, (2차) 외부전문가
- 4) 평가방법
 - ① 자체평가 :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권영향평가 실시(1차: 인권경영TF팀, 2차 : 외부전문가)
 - ② 최종평가: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평가 실시
- 5) 평가체계 : 분야별 백 점 점수로 산출, 종합점수는 분야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6) 평가보고 : 평가의견 수렴 및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 7) 심의평가 : 2021. 12. 08.(수) 14:00~15:00
 - ① 내부위원 3명 : 안충식(본부장), 강규성(경영관리실장), 허동훈(노조조합위원장)
 - ② 외부위원 4명 : 이경섭(고문노무사), 장영만(고문변호사), 윤미래(하남시여성단체협의회), 김형분(前하남시자치행정국장)

2.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구성

- ☞ 기관운영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반으로 공사에 맞게 조정하여 인권경영 체제 구축 등 13개 분야 개발하여 활용
- ☞ 주요사업 지표는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복지팀(마루공원)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항목을 개발하여 활용

평가 대상	평가분야	평가지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214개	인권경영 체제 구축 등 13개 분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26개	지역복지팀의 5개 분야

① 세부지표별 점수 부여기준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	1	0	평가제외	평가제외

$$100\text{점 단위 환산방법} = \frac{\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2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times 100$$

② 평가등급체계 : 평균달성률 기준 등급(1~9등급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점 ~90점	90점미만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20점	20점미만 ~0점

③ 분야별 평가구성[기관운영(13개 분야,214 지표), 주요사업(5개 분야, 26개 지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13개 분야,214 지표)

구분	분야	평가지표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3	
2	고용상의 비차별	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6	
4	강제 노동의 금지	11	
5	아동노동의 금지	14	
6	산업안전 보장	1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0	
9	환경권 보장	18	
10	고객인권 보호	15	
1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11	
12	직원 인권 보호	28	
13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	14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5개 분야, 26개 지표)

구분	분 야	평가지표	비고
1	공정 운영	6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4	
3	사업장 안전보장	7	
4	근무자 인권보호	5	
5	지역주민 환경보장	4	

④ 평가절차 및 기간

연번	구분	주요 내용	기간
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구성 - 기관운영,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설계 - 체크리스트 내용(적절성 등)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및 컨설팅 용역회사 자문	8월 4주 (~08/31)
▼			
2	인권영향평가 TF팀 구성	○ 인권경영 TF팀 구성[법무감사팀-865(2021.08.27.)] - 평가지표별 담당자 확정 및 화상회의 참석 메일 송부	8월 4주 (~08/31)
▼			
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교육	○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설명 - 지표에 대한 이해 체크리스트 평가 및 평가지표 제출(법무감사팀)	9월 1~2주 (9/7~9/14)
▼			
4	‘인권영향평가’ 증빙자료 제출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자료제출 - 체크리스트 평가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부서 ☞ 법무감사팀)	9월 2주 (~9/14)
▼			
5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의 평가 -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및 제출	9월 2~3주 (~9/17)

□ 2021년 인권영향평가 분석결과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총점 92점(1등급)

☞ 2021년 기관운영 평가 결과 92점(1등급)으로 전년(89점) 대비 3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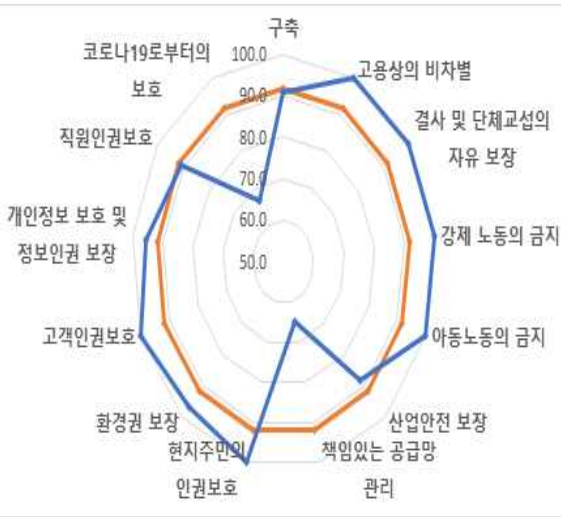
- ▶ 공사의 기관운영 인권 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내용을 준수하였음
 - 총 214개 지표 중 '예' 163개, '보완' 32개, '해당 없음' 19개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권고되어 있는 진단 항목과 분야를 바탕으로 공사 특성에 맞게 고도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 공사 홈페이지 등에 인권경영 추진 성과 공개 및 공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인권경영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 ▶ 또한, 공사에서 제공하는 인권경영상의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하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권침해 구제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 ▶ 기관운영 평가의 경우, 평균 종합점수는 92점으로 평균달성률 기준 1등급을 달성함. 다만, 13개 분야 중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직원인권보호」 및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직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점에 대한 이행상황을 또한 점검을 실시해야 함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총점 100점(1등급)

- ▶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마루공원'을 대상으로 5개 분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 ▶ 공정운영,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사업장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장의 항목에서 인권리스크가 진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평가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표준 체크리스트의 기본 안에서 체계적인 관리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주요사업부서 평가의 경우, 평균 종합점수는 100점으로 평균달성률 기준 1등급을 달성

□ 주요 지표별 권고의견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내부 91.8점 / 외부 91.8점 📌 평균 91.8점



연번	평가 분야	내부	외부	평균
총 점		91.8	91.8	91.8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0.9	90.9	90.9
2	고용상의 비차별	100.0	100.0	10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0	100.0	10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0	100.0	10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0	100.0	100.0
6	산업 안전 보장	88.2	88.2	88.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5.0	65.0	65.0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100.0	100.0	100.0
9	환경권 보장	97.1	97.1	97.1
10	고객인권보호	100.0	100.0	100.0
1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95.5	95.5	95.5
12	직원 인권 보호	91.1	91.1	91.1
13	코로나 19로부터의 보호	66.7	66.7	66.7

기관운영 평가의 경우, 평균 종합점수는 91.8점으로 평균달성률 기준 1등급을 달성함. 다만, 13개 분야 중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직원인권보호」 및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보완을 권고

○ 주요 지표별 권고의견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인권존중,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와 개선
- 공사의 활동으로 부정적 인권 영향이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 협의
-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 성과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게 객관적이고 일관적하도록 유의
- 인권침해사건 피해자가 구제절차를 이해하고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홍보

▶ 산업 안전보장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 근로자의 요청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의 접근성 보장
- 전문가에 의한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
-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운영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공급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중요 협력회사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이행 요구
-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 마련
-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
- 설문이나 현장방문을 등의 방법으로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 고려
-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
-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환경권 보장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하고, 현지 주민도 대피에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마련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 개인정보 보호

- 화장실 등의 공공시설은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시설물로부터 안전하도록 관리

▶ 직원 인권 보호

☞ 갑질·폭력 예방 및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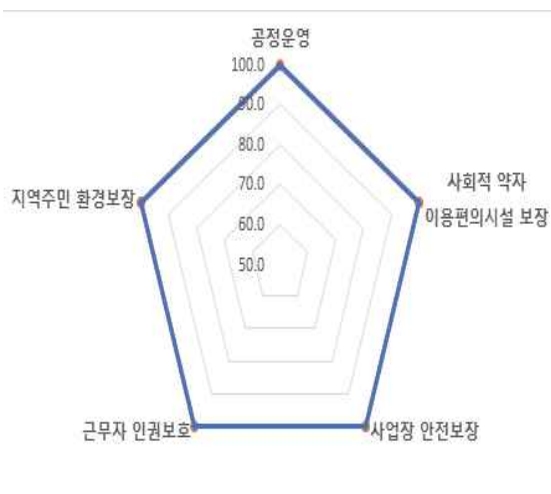
- 갑질 등 행위의 실태파악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담당조직 운영, 홍보 등의 활동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실태파악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언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개선
- 협력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성폭력에 관한 구제조치 마련

▶ **코로나 19로부터의 보호**

☞ **건강 및 안전, 노동자 권리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금지**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산업안전·안전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인식 제고 및 교육 제공
- 과거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취업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
- 코로나 감염 직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 혹은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직원 또는 대외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
- 코로나19 완치 후 복귀한 직원이 차별적 대우 및 사회적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소외 그룹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절차 마련
- 협력업체, 특히 중소기업과 맺은 계약은 최대한 유지
-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 결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 고충처리제도, 핫라인 등 채널을 통해 코로나에 따른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내부 100.0점 / 외부 100.0점 ☞ 평균 100.0점**



연번	평가 분야	내부	외부	평균
총점		100	100	100
1	공정운영	100.0	100.0	100.0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100.0	100.0	100.0
3	사업장 안전보장	100.0	100.0	10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0	100.0	100.0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0	100.0	100.0

주요사업 평가의 경우, **평균 종합점수는 100.0점으로 평균달성률 기준 1등급을 달성함.**

□ 지표별 상세 분석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내부 90.9점 / 외부 90.9점 📖 평균 90.9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90.9	90.9
인권준중 정책선언		91.7	91.7	91.7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1.7	91.7	91.7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0	100.0	100.0
인권경영 성과		78.6	78.6	78.6
구제절차 마련		94.4	94.4	94.4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평가 결과: **90.9점**

- ▶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될 것을 권장
- ▶ 공사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가 필요
- ▶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 인권침해사건 피해자가 구제절차를 이해하고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구제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홍보하는 제도를 마련 및 권장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내부 100.0점 / 외부 100.0점 📖 평균 100.0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고용상의 비차별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0	100.0
고용상 비차별		100.0	100.0	100.0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0	100.0	100.0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100.0	100.0	100.0
외국인 노동자 비차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고용상의 비차별 평가결과: **100.0점**

- ▶ 고용상 비차별, 고용상 남녀 비차별 등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의 성과가 있음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내부 100.0점 / 외부 100.0점 **☞ 평균 100.0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0		100.0		100.0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0		100.0		100.0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0		100.0		100.0
	결사 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0		100.0		100.0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100.0		100.0		100.0

☞ 결사·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 보장 평가 결과: **100.0점**

- ▶ 공동단체협약서에 모든 내용 규정되어 있으며, 노·사간의 화합하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보장되어 잘 운영되고 있음

○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내부 100.0점 / 외부 100.0점 **☞ 평균 100.0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강제노동의 금지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0		100.0		100.0
	강제노동금지	100.0		100.0		100.0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강제노동의 금지 평가결과: **100점**

- ▶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하지 않는 등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음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내부 100.0점 / 외부 100.0점 **☞ 평균 100.0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아동노동의 금지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0		100.0		100.0
	연소자 고용 금지	100.0		100.0		100.0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아동노동의 금지 평가 결과: **100점**

- ▶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서류를 통해 나이를 확인 후 고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분야 6. 산업 안전보장: 내부 88.2점 / 외부 88.2점 📌 **평균 88.2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산업 안전 보장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88.2		88.2		88.2
	작업장 안전	100.0		100.0		100.0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0		100.0		100.0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70.0		70.0		70.0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83.3		83.3		83.3

📌 산업 안전 보장 평가 결과: **88.2점**

- ▶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 마련
- ▶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 및 권장
-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제도 마련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내부 65.0점 / 외부 65.0점 / **평균 65.0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65.0		65.0		65.0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2.5		62.5		62.5
	모니터링 실시	50.0		50.0		50.0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75.0		75.0		75.0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평가 결과: **65.0점**

- ▶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수행할 것을 권장
- ▶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 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관계의 단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
- ▶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분야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내부 100.0점 / 외부 100.0점 **평균 100.0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0		100.0		100.0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0		100.0		100.0

☞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평가 결과: **100.0점**

- ▶ 관련 법령에서 공사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법률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 중

○ 분야 9. 환경권 보장: 내부 97.1점 / 외부 97.1점 / **평균 97.1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환경권 보장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97.1		97.1		97.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0.0		100.0		100.0
	환경정보의 공개	100.0		100.0		100.0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0		100.0		100.0
	비상계획 수립	90.0		90.0		90.0

☞ 환경권 보장 평가 결과: **97.1점**

- ▶ 공사는 환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 점검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함
- ▶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환경 사고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되도록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 환경 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 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하고 있음
- ▶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하고, 현지주민도 대피에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분야 10. 고객 인권 보호: 내부 100.0점 / 외부 100.0점 📄 평균 100.0점

고객 인권보호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0	100.0	100.0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0		100.0	
서비스·정보 등 이상 시 조치	100.0		100.0	
고객 사생활 보호	100.0		100.0	

📄 고객 인권 보호 평가 결과: 100.0점

- ▶ 공사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기획 및 운영 단계를 안내함에 있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 공사는 서비스 결함(정보의 이상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

○ 분야 1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내부 95.5점 / 외부 95.5점 📄 평균 95.5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95.5	95.5	95.5
개인 정보 보호	92.9		92.9	
정보 인권 보장	100.0		100.0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평가 결과: 95.5점

- ▶ 공사는 직원의 위치 정보수집, 노동조합 활동 감시 등을 위하여 공사시설 내 통신 및 보안장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운영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공사는 화장실 등의 공공시설이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시설물로부터 안전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함

○ 분야 12. 직원 인권 보호: 내부 91.1점 / 외부 91.1점 📖 평균 91.1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직원의 인권 보호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91.1		91.1		91.1
	갑질 폭력 예방 및 괴롭힘 금지	83.3		83.3		83.3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91.7		91.7		91.7
	일·가정 양립	100.0		100.0		100.0
	휴식권	100.0		100.0		100.0

📖 직원 인권 보호 평가 결과: 91.1점

- ▶ 공사는 정기적으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함
- ▶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실태파악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함
- ▶ 협력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성폭력에 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함

○ 분야 13. 코로나 19로부터의 보호: 내부 66.7점 / 외부 66.7점 📖 평균 66.7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코로나 19로부터의 보호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66.7		66.7		66.7
	건강 및 안전	83.3		83.3		83.3
	노동자 권리 보호	83.3		83.3		83.3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금지	50.0		50.0		50.0

📖 코로나 19로부터의 보호 평가 결과: 66.7점

- ▶ 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해 모든 업무 공간 및 환경(공용 공간 및 화장실, 기숙사, 구내식당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는 등 코로나 19로부터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산업보건·안전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인식 제고 및 교육을 제공하도록 권장함
- ▶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소외 그룹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마련
- ▶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 결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분야. 지역복지팀의 마루공원: 내부 100.0점 / 외부 100.0점 📌 **평균 100.0점**

	내용	내부 자체평가		외부기관		평균
지역복지팀 마루공원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0		100.0		100.0
	공정운영	100.0		100.0		100.0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100.0		100.0		100.0
	사업장 안전보장	100.0		100.0		100.0
	근무자 인권보호	100.0		100.0		100.0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0		100.0		100.0

📌 지역복지팀의 마루공원: **100.0점**

- ▶ 공사는 장사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련 지자체 및 마을주민 등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 공사 장사시설은 장애인 화장실과 출입구 등의 시설이 되어있고,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를 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또한 장사시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비·기기의 안전을 위해 유지·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 그리고 근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및 근무자들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 공사 장사시설은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지역주민의 환경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제거를 통한 인권경영 조직 구현
- 달성율이 낮은 지표관리에 대한 등급 개선 노력 강화
-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매뉴얼 개정
- 인권경영 체계,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한 인권의식 확산

□ 행정사항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이행 조치 ☞ 전부서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 법무감사팀
-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유

- 붙임 : 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보고 1부.
2. 인권영향평가 후속 조치계획 1부.
3. 외부평가 위원회 권고사항 1부.
4. 인권경영규정 1부. 끝.